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. 7. 11 선고 2023가단535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
담당변호사 이춘희

피 고 A
변 론 종 결 2023. 6. 27.
판 결 선 고 2023. 7. 11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22. 5. 1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. 6. 10. 접수 제12453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① B이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8. 10. 12. B와 사이에 보증번호 D, 보증금액 76,500,000원, 보증기한 2019. 10. 11.(이후 2022. 10. 7.까지로 변경)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② B이 E 주식회사에게 2018. 10. 10.자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 사용에 관한 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와 관련하여 2018. 10. 12. 보증번호 F, 보증금액 50,000,000원(이후 42,000,000원으로 변경), 보증기한 2019. 10. 11.(이후 2022. 10. 7.로 변경)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.

나. B이 위 ①, ②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원고는 B을 대위하여 2022. 9. 30. E 주식회사에 40,773,877원을, 2023. 1. 16. C 주식회사에 77,533,608원을 각 변제하였다.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,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연 8%이고, 원고가 구상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해 지급한 법적절차비용은 2,110,820원이며,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약금은 440,130원이다.

다. 한편, B은 2022. 5. 18.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해 6. 10.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접수 제12453호로 채권최고액 15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4다53173 판결).

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2022. 5. 18.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, 실제로 2022. 9. 30. 및 2023. 1. 16.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는바,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.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(합계 120,858,435원=40,773,877원+77,533,608원+2,110,820원+440,130원)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.

나. 무자력

(1) 적극재산: 아래 <표1> 기재와 같은 부동산 평가액 합계 626,489,500원

	부동산	가액 (원)
1	경상북도 상주시 G 대 48㎡	12,868,800
2	경상북도 상주시 H 대 39㎡	23,692,500
3	경상북도 상주시 I 대 440㎡	267,300,000
4	경상북도 상주시 H외 1필지 J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사무실70.2㎡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사무소81.9㎡철골염화비닐강판지붕 케노피12㎡[도로명 주소] 경상북도 상주시 K	60,705,900
5	경상북도 상주시 I에 있는 L호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64.46㎡	41,900,000

6	경상북도 상주시 M 주건축물N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95.48㎡	122,000,000
7	경상북도 상주시 O 대 261㎡	21,689,100
8	경상북도 상주시 M 대 707㎡	35,562,100
9	경상북도 상주시 P 과수원 796㎡	39,242,800
10	경상북도 상주시 Q 과수원 31㎡	1,528,300
	합계	626,489,500원

<표1>

(2) 소극재산: 아래 <표2> 기재와 같은 채무 합계 750,709,877원

	채권자	채무액(원)
1	C은행 경북여신관리단	2,451,000
2	C은행 경북여신관리단	1,000
3	R조합	9,000,000
4	S조합	5,678,000
5	S조합	6,489,000
6	T보험 서울	3,196,000
7	U조합 (계좌번호 1 생략)	200,000,000
8	U조합 (계좌번호 2 생략)	10,000,000
9	U조합 (계좌번호 2 생략)	80,000,000
10	U조합 (계좌번호 3 생략)	40,000,000
11	U조합 (계좌번호 4 생략)	130,000,000
12	V보험	1,600,000
13	E회사	10,294,877
14	C은행 함창지점	90,000,000
15	W	110,000,000
16	X	52,000,000
	합계	750,709,877원

<표2>

[인정근거] 갑 제5호증의 2, 갑 제8호증의 2 내지 4, 갑 제8호증의 1 내지 4, 갑 제9호증의 1 내지 6, 갑 제10호증, 갑 제11호증의 1, 2,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, 갑 제13호증, 갑 제14호증, 갑

제15호증의 각 기재, 법원행정처장, Y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다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관련 법리

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(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),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(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),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.

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,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, 무자력의 정도,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,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,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)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

된다(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다206986 판결).

2) 구체적인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부업자로서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면서 그 당시 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취소 및 원상회복

결국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배예선

목 록

1. 상주시 대 48㎡

2. 상주시 대 39㎡

3. 상주시 대 440㎡

4. 상주시 , 호

[도로명주소] 상주시

위 지상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사무실 70.2㎡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사무소 81.9㎡

철골 얇화비닐강판지붕 케노피 12㎡

